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前文,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공익실현의무,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또

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검사의 직무(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조항 위배

(1) 사실관계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융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정 등 불법적 방식의 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1. 10. 15. 당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대통령경선후보의 지위에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고 하였지만, 해명과 달리 김건희는 이정필에게 어떤 주식이든 거래해서 수익을 내달라고 계좌를 맡긴 것(위탁관리)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라’면서 계좌를 맡겼음이 드러났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 12. 14.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라고 발언하였으나, 2022. 12. 30. 서울중앙지검이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종합 의견서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과 김건희의 총 매매 차익은 13억 9천만 원 가량, 최은순은 9억 135만 원가량으로 두 사람의 총 매매 차익을 합치면 2,291,350,000원 가량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역시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2020. 4. 7. 김건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고,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 세력이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도이치모터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2023. 2. 10. 1심 및 2024. 9. 12. 2심 판결에서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음을 인정했다. 특히 2010. 10. 20. 이전과 2010. 10. 21. 이후에 모두 동원됐던 금융계좌는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의 계좌가 유일하며, 21일 이후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된 102건 가운데 김건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하고 관여한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고합982, 1033, 1143, 1159(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

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2024. 5. 13. 자로 단행한 검찰인사를 승인하였는데, 이 인사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입장을 공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교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비호를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자초함으로써 검찰권 행사 및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는 검찰권 행사에 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창수 검사장은 2024. 7. 20.에 이르러서야 별도의 장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여타 피의자와 달리 검찰은 김건희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조사 장소로 하고 김건희 조사 담당 검사들도 미리 휴대폰을 경호처에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사전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사후 보고하였고, 조사 사실

도 사후에 공개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나아가 검찰은 2024. 10. 17. 피의자 김건희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는 그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명백히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2) 헌법・법률 위반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혐의를 비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이에 불응하여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들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들을 전보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였고,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를 범하였으며, 검사는 그 직무

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했다.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배,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위배

(1) 사실관계

(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경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7. 1.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중점사업)되었고, 2021. 4.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이때까지 동 고속도로의 노선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국토부는 2021. 9. 우리나라 기본 도로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동서9축'은 국토를 횡단하는 10개 축 도로 중 영종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이

어지는 노선을 뜻한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KDI의 예타보고서에서도 사업목적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상 ‘동서9축’에 포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타보고서의 노선은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과 일치하고 있었다.

(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노선 변경 추진 및 그 문제점

그러나 2022. 3. 1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11일 후인 3. 29.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평가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일 5일 만인 4. 4.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도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2022. 5. 19.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에 전달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시에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다. 2023. 1. 13. 국토부의 관계기관 2차 협의 요청에 있어 강상면 종점부 변경 노선을 단일 노선으로 기관에 송부했으며 이어 2023. 5. 8. 국토부가 ‘전략환경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발표하면서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공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용역사가 만들고, 국토부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반경 약 5㎞ 안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와 대통령

의 장모인 최은순, 김건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으로서, 이 가운데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국도 6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동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면서 애초 사업취지는 상실되었다. 강상면 종점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통과 원안과 50% 이상 다른 노선으로,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규정된 '동서9축의 지선'으로 볼 수 없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 기술된 도로의 목적에도 완전히 벗어난 노선으로 국토부는 변경 노선이 동서9축인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 계획이 없다며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예산이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변경안의 예산 추계 또한 급조한 추계로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설계 용역을 공동으로 참여한 업

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급 공사 수가 증가하였는데 2020. 1.부터 2022. 4.까지 2년 3개월간 293건, 853억 3,604만 원의 정부 관련 공사를 수주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 5.부터 2024. 10.까지 2년 4개월간 346건, 1,944억 7,732만 원의 관급 공사를 수주했으며,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최대주주가 같은 인물인 한종산업개발도 2020. 1.부터 2022. 4.까지 3건, 401억 4,811만 원 수주에서 2022. 5.부터 2024. 10.까지 9건 775억 2,354만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경동엔지니어링도 같은 기간 180건, 965억 6,338만 원에서 220건, 1,533억 3,285억 원으로 관급 공사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인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확정한 노선을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부동산을 소유한 강상면으로 종점부를 변경하면서 원안 노선의 50% 이상을 변동시킨 것으로서, 배우자 김건희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2023. 7. 6. 2031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白紙化)를 선언하여 이 문제를 정쟁화하였다.

(2)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비추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양평고속도로 입안에 관한 국토부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국토부 공무원 등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1].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

1)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위법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였다면,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의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대통령으로서의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에 해당하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국토부 공무원, 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권한이 있는 자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제3자인 민간업체들에게도 관급 공사를 몰아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형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여 결과적으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도와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비추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1) 사실관계

(가)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직자인 사람이고, 김건희는 그 배우자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교·의례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재영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① 2022. 6.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소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시가 179만원 상당의 향수 및 화장품 등을 수수하고, ② 2022.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수수하고, ③ 2022. 9. 13.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하였다.

그 청탁 취지는 ① 2022. 7.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진행되는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는 미국의 전직 연방하원의원 6명 등 총 15명이 방문하니 영부인이 시간을 내 이들을 접견해 달라, ②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 ③ 위 김창준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 달라, ④ 최재영 자신이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 중단된 통일TV가 재송출 될 수 있게 도와 달라, ⑤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김건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을 수수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다.

(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인바,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배우자인 김건희가 3회에 걸쳐 최재영으로부터 고가의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사실을 지득하였음에도,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런 신고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

(2) 사건의 부당한 처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2023. 12. 19.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같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6. 10. 현행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요구·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2024. 6. 12. 종결처리 결과 설명을 통해 명품 가방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신고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며,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24. 7. 21. 김건희를 비공개 방문조사한 이후 2024. 9. 2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10. 2.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사건처리의 문제점

(가) 청탁금지법위반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 부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에 대해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그럼에도 권익위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권한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부존재한다고 단정함으로써,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8조 제4항)는 금품등의 수수금지죄의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종결처분하였다.

그간 매우 엄격하게 부패방지 업무를 해온 국민권익위원회나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사 끝에 서둘러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관하여 무혐의로 종결 처분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나) 알선수재죄

또한 공무원 가족이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수재죄의 적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부패 사건임에도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형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비상임위원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종결 처리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으며 2024. 8. 8.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했다. 사망 전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며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4) 헌법・법률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 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했다.

부패는 법의 지배와 경제 질서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에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견지하고 청렴성을 고양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긴요하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므로 타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상 수수 금지 금

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8조 제4항).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는 공직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받은 이익은 공직자가 받은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제22조 제1항 제2호).

결국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하였고, 김건희의 행위는 비록 청탁금지법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그 수수 금액, 경위, 청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함은 물론 범정 또한 무겁다.

공여자는 대통령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청탁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것이고,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는 아무런 죄

의식 없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대통령 윤석열은 진상을 파악하였음에도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기도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는 고사하고 일반 시민 수준의 준법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관련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이로 인해 헌법질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심대하다.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 66조 제2항, 제69조) 및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감사원법(감사원법 제2조, 제3조, 제20조) 위배

(1) 사실관계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2022. 3. 20.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

고 공언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방침이 결정・발표되었다.

4. 24.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 이전 TF는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를 재검토한 후 외교장관 공관으로 잠정 결정하고, ‘21그램’을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하였고, 5. 25. 행안부가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설계 및 공사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1그램이 과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서 두 차례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었고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도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전문’ 업체로,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2022. 5. 15. 대통령실은 계약 체결 전임에도 불구하고 21그램에 공사 착수를 지시하였고, 21그램은 5. 15. 07:30부터 협력업체 인원을 투입하여 철거 등에 착수하였다.

2022. 8. 16. 행안부가 대통령 관저 설계 및 공사 2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1그램 소개로 제주 소재 원담종합건설과 계약한 것이었는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21그램’이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했다는 의혹에 제기되었다. 한편, 용산구청의 착공 허가일은 2022. 8. 29.인데, 등기부등본상 사용승인일은 9. 5.이라는 점에서 46㎡(약 14평)를 증축하는 데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아 실제 공사 착수일은 그 이전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22. 11. 7.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에 입주하였다.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이상과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하여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이전 TF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21그램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도 역시 보안상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2. 10. 12.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고, 감사원은 두 달 뒤인 12. 1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4. 9. 12.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종결이 원칙임에도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감사 청구 701일, 감사실시 결정 638일 만에야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사 이전 공사 계약 총 56건(규모 341억여 원)

이 감사 대상으로, 결론적으로 대통령 관저는 계약부터 시공·준공 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법령 위반을 했음이 드러났다.

우선 대통령 관저 증축과 구조 보강, 인테리어 공사 전반을 책임진 21그램은 2022. 4.말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5. 12. 견적서를 제출했고 사흘 뒤인 5. 15.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5. 25. 입찰공고가 났으니,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인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라서 법령 위반을 하였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파견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21그램의 무자격 공사에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적하자, 21그램은 증축공사 자격이 있는 제주시 원담종합건설을 섭외하였는데 관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은 소위 '딱지 업체'였으며, 실제 증축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의 가족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맡았고 이 업체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21그램이 관저 공사 관련하여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곳이 무자격 업체였고 이 과정에서 21그램은 대통령비서실 승인도 받지 않는 등 비서실의 감독도 매우 부실하였다.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과물에 맞춰 사후에 계약·설계가 이뤄지는 상황도 여러 차례 존재하였고, 내역서도 공사 사용 금액에 맞춰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으며 공사 관련하여 나라장터에 올라온 많은 입찰공고들도 역시 대부분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 관저는 준공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데도 이 과정을 기록한 '준공검사조서'가 2건이나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허위 준공검사조서 1차에는 행안부만, 2차에는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이 서명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업체들은 최종 준공도면도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업체들이 그나마 중간 중간 행안부와 경호처에 제출한 도면들은 최종 공사 결과와 달랐다.

감사원은 21그램 등이 총 30억 5,475만원을 받아 하청을 준 하도급 업체에 2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이 없어 공사비 지급 적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감사원은 21그램을 중심으로 한 법 위반 사실들을 확인했으면서도 업체의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은 “추천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관련자들의 답변에서 조사를 멈추었고,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경호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1그램 선정에 대한 책임은 관저 이전 공사 총괄책임자로서 21그램에 처음 연락했다고 하는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뿐이었고, 감사원은 김오진 비서관이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였으며, 김오진 전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 추천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의에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21그램은 정식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없던 공간을 증축했는데, 업체가 발주기관이나 대통령 부부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무자격으로 법을 위반해 가며 증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증축으로 어떤 시설이 생겼는지도 조사되지 않았는바 최근 증축된 공간이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라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결국 감사원은 계약 체결 전 공사 진행, 무자격 업체 참여 등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인용하여 대통령실 사정을 변호하면서 감사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이

름이 나오지 않아 특혜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절차적 위법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에 '기관 주의' 조치만 내렸고, 2024. 10. 15.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각종 불법을 저지른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이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고발할 중대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고발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애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에서 관저 등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기각을 하여 이미 불완전한 감사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감사 실시를 결정한 사안들조차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부실 감사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공사 업체이자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관저 증축 공사를 시공하도록 수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 헌법·법률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관하여 과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서 두 차례나 인테

리어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으로 하여금 공사를 담당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불법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무자격업체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여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김건희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제 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하고, 나아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감사원(감사원법 제2조, 제3조, 제20조)에 대하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재정낭비에 대한 조사를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하도록 방조 또는 조장하였다.

이처럼 운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여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 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배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감사원법(감사원법 제2조, 제3조, 제20조)을 위반한 것이다.

마. 탄핵사유 : 공익실현의무 위배

(1) 공익실현의무 위배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

한편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3)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검사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 부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불법적인 노선변경을 지시·용인하거나 배우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무자격 업체의 불법적인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기획·지시한 것은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 제53조) 남용

(1) 법률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총 24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즉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수정가결), 채 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방통위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등이 그것이다. 이는 12년 재임기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해당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입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처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로 보는 예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등).

따라서 헌법상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입법부보다 우위에 서서 입법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경우로 보게 되는데, 대통령의 당파적 거부권 남용은 정치적 중립,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며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의 경우 공정성이나 평등의 측면에서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하는데(이준일,「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2023),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에 따른 헌법적 한계에 해당한다.

즉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

하여 공익실현의무를 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따라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공익실현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국정사안에 있어서는 이를 회피하는 등 권한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 행사의 당연한 헌법적 한계인 것이다.

(2) 헌법・법률 위반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관저공사 의혹 등에 대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소위 채 해병 특검법 역시 수차례에 걸쳐 거부함으로써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남용하는 헌법 위반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

직권남용

(1) 사실관계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2023. 7. 19. 오전 9시 10분경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등병(7. 20.자 상등병으로 추서 진급)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인 7. 20.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해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2023. 7. 30.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예정”이라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서면 결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7. 31.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8. 2.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을 넘기려고 계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7. 31.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여 같은 날 11:00경 유선전화(02-800-7070[2])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하여 예정된 경찰이첩 보류를 지시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종료 후 14초 뒤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2:00경으로 예정되었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이첩보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여 사건인계서, 사건기록 목록 등에서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고 요구하였다.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군사법원법상 군검찰사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시로 판단하고, 2023. 8. 2. 10:30경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당시 7여단장 등 8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채 해병 사망사건 사건인계서와 조사기록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이 사건기록을 이첩한 당일인 2023. 8.

2) 02-800-7070 번호는 2023. 7. 31.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이종섭 국방부장관 외에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서관과 통화한 바 있고, 당시에는 위 회선의 가입자명이 대통령실로 되어 있었다가 2024. 5. 23.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다.

2. 12:07경, 12:43경, 12:57경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하여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을 지시하였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같은 날 12:45경 박정훈 대령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하였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같은 날 13:50경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20경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일체를 회수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 중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당시 7여단장 등을 제외하고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2023. 8. 24.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은 2024. 3.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였다. 당시는 4. 10.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의해 해병대 채 해병 순직사건 축소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위 수사에 있어 주요 피의자 내지 참고인이어서 출국금지대상이었으나, 공수처의 승인 없이 법무부

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같은 달 10.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국내외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달 21. 일시귀국한 후, 같은 달 25. 호주대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특검법에 대한 자의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21대 국회는 2024. 5. 2.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채 해병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것이고, 수사 무마 혐의사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1. 위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하였다. 위 법안은 같은 달 5. 28. 재의결절차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는 2024. 7. 5.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채 상병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

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것이고, 수사 무마 혐의사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9. 위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하였다. 위 법안은 같은 달 7. 25. 재의결절차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는 2024. 9. 19.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10. 2. 위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하였다. 위 법안은 2024. 10. 4. 재의결절차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2) 헌법·법률 위반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개정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개정)은 소속 상급

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검사 및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신설하고(제36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제38조),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제39조).[3]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 제2항).

군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무마·축소 외압 등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인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가 성립하게 된다.

군수사단(군사경찰)은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 등에 송치하여야 하며,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 해병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청 등에

3)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송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사건인 채 해병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무마·축소 외압 등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하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직속상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박성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에 대한 혐의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하여금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혐의 유무 판단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하여금 해병대 수사단에 의해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023. 9.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로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공수처는 2024. 1.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3.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였다.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채 해병 순직사건 축소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있어 주요 피의자 내지 참고인이어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대상이었으나, 같은 달 8. 공수처의 확인 절차 없이 이종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같은 달 10. 호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공수처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이종섭에 대한 조사 및 신병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등의 죄를 범한 이종섭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자의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의한 헌법위배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제21대 국회에

서 2024. 5. 2.자 의결된 법률안, 제22대 국회에서 2024. 7. 5.자와 9. 19.자 의결된 각 법률안에 대하여 3차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위 법률안은 채 해병 순직사건 및 그 축소수사 외압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수사를 피하고자 자의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의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제53조 제2항) 취지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에 위배된다. 이는 중대한 법률위반 및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023. 7. 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 국적 최00(20대, 여성)로부터 필로폰 매매 일당 관련 제보를 받아, 같은 해 09. 27.경까지 20차례 검거 활동으로 24명을 검거(14명 구속)하고 10차례 압수수색을 통하여

필로폰 27.8kg을 압수하는 수사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압수한 마약은 총 74㎏으로, 시가 약 2,200억 원,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필로폰 단일 적발 압수량 기준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같은 해 9. 9. 同 마약사건 수사팀장인 백해룡 경정은 '마약 밀반입에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같은 달 11일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을 거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보고하였다.

2023. 9. 수사팀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마약 수사성과를 보고하여 경찰청장의 치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백해룡 경정은 관련 수사 브리핑을 예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곧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해달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9. 22.로 예정된 동 수사 언론 브리핑이 연기되었다. 10. 5.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대면하여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 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차례 수정 끝에 관련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10. 6. 정기섭 인천세관 통관2국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방문하여 "세관 언급 안 하면 안 되나"고 요청하였다.

2023. 10. 기자 브리핑을 다시 앞두고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으

로부터 “인천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으며, 10. 10.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세관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고, 결국 서울경찰청의 사건 이첩 지시로 수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한편 2023. 10. 11.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이 기사화되어 중단된 수사가 재개되었지만, 그 후 영등포경찰서 담당 검사가 교체되었다. 그 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어 세관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CCTV, PC에 대한 증거 확보를 못하게 되었고 백해룡 경정은 담당검사 회피신청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2024. 2. 2. 경찰청이 총경 인사를 단행하였다. 직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이 사건 마약사건 지휘부서의 실무책임자였던 강상문 총경이 영등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전보되었다. 같은해 5. 23. 서울경찰청에서 세관 연루 사건 수사 회의가 진행되어 조창배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이 사건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종결을 요청하였다.

2024. 7. 17. 경찰청은 백해룡 경정에 대하여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파출소 지구대장으로 좌천 발령되고, 징계(경고)를 받았다. 이에 반하여 백해룡 경정에 대한 사건 청탁을 한 조병노 경무관은

2023. 11. ‘불문’처분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다.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조병노 경무관의 승진·수사무마 청탁)

조병노 경무관은 제39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세청 사무관으로 입직하여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경찰로 옮긴 경력이 있고 인천세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편 조병노 경무관은 2023. 8. 9.자 이종호-김규현 변호사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인천세관장 - 조병노 - 이종호 - 김건희 사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사건 수사에 대한 무마 로비가 있었는지 의심되는데, 이는 “용산에서 사건 내용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해달라”는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의 발언에도 나타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제2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불리게 되어 2024. 10. 8.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등 22인)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3)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수사에 관하여는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4. 18.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마약의 사전 유입 억제, 사후 단속 및 수사 강화 등 제도 확충 및 인력 보강 조치가 뒤따랐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마약 유입건에 관하여 관련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고, 특히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마약이 국내에 유입된 것과 관련하여 세관 등 국가기관의 임무 해태 내지 마약조직과의 유착 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그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의하여 진행된 수사에 관하여 경찰 내외에서 각종 외압이 행해지고 있었고, 특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관세청에 의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적어도 인천공항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보도된 10. 11.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수사방해 및 관세청의 수사 외압을 묵인·방조하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4. 2. 정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당시 이 사건 마약 수사건에 대한 지휘부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강상문 총경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또한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찬수를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이 사건 마약수사의 축소은폐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라. 탄핵사유 :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1)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헌법·법률위반을 감추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용하였고,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세관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부당한 축소·무마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여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운영의 기본인 법치주의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헌법 제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

(1) 사실관계

(가) 당대표 선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 당내선거에 개입하는 등 지속적인 당무개입을 하여 왔다. 대통령 당선 직후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축출(권성동 대표에게 '체리따봉')한 후, 나경원 후보자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직에서 해임하고, 안철수 후보자에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비윤계' 당대표 후보자(안철수, 나경원 등)에 대한 압력으로 경선운동을 방해하였으며,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A씨가 국민의힘 당원 B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전파해달라고 요청한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친윤계' 김기현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통령실 직원들을 동원하였다.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에서 김기현 당대표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친윤' 정치인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하였다. 또한 2023. 3.경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외교'를 옹호하면 공천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례나, 2023. 8.경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한 김태우(청와대 재직시절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확정)를 특별사면하여 '윤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토록 한 것, 그리고 2023. 10.경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22대 총선 공천에 관한 혁신안을

만든다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해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한 사례, 2023. 12.경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에게 ‘중진·지도부·친윤 등의 험지 출마·불출마 등 혁신안’을 수용하라면서 불출마를 종용하고 2024. 1.경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추천을 이유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선거(제21대 총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2)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지위와 책임은 선거의 영역에서는 ‘선거에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서의 지위로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원을 통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당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고,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헌법·법률 위반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무에 개입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도록 기획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를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판결로 확정).

정당법 제49조(당대표선거등의 자유방해)는 "정당의 대표자 ·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당대표경선등)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개입)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55조 제5항).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당대표 선출이나 총선 공천 등 당무에 개입함으로써 헌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정당법 상 당대표선거등의 자유방해죄(제49조)와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죄(제85조 제1항)를 범하였다.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가) 사실관계

명태균(2024. 11. 15. 구속)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태열 명의로 경남 창원시 소재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경남 일원에서 속칭 ‘정치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명태균은 2017. 8.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입후보를 염두에 두고 창원을 방문한 김영선의 공보물 제작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김영선과 교류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고, 2021. 6.경 당시 검찰총장 직을 사퇴한 뒤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를 소개받자 김건희에게 “당신은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말하는 등으로 환심을 샀고, 이를 기화로 윤석열 부부에게 수시로 정치적 조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및 이른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연락책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태균은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81회 상당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공표 또는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를 비용 약 3억 7,52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강혜경 등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달라”,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 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하고 ARS 응답자 표본을 부풀리거나 미리 ARS를 돌려서 응답자의 지지성향을 확인한 뒤 공식 여론조사 날에는 방해조사를 하는 수법 등 언행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직접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보고하였다.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공유했고, 동 여론조사 결과는 캠프 내 전략회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명태균은 2021. 9.경 및 2022. 4.경 김건희로부터 2회에 걸쳐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동 여론조사 비용을 대선회계에 반영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거액이 소요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3억 7,52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명태균은 2022. 3. 20.경 김영선의 전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에게 “윤석열 부부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며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 상당에 대한 정산내역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동 정산내역서를 소지한 채 서울로 가 윤석열을 만나 이 돈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윤석열이 이에 대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 무렵 윤석열 부부에게 위 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자, 대통령 당선인 지위와 권세를 활용하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을 전략공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윤석열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김건희는 2022. 5. 2.경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도와줘서 고맙다. 김영선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선물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윤석열은 2022. 5. 9.경 명태균과 통화하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등으로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명태균의 상기 청탁이 성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윤석열로부터 김영선의 공천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명태균은 윤석열에게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윤석열과 명태균 간의 통화가 끝난 직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명태균은 김건희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라고 말하며, 강혜경에게 김영선에 대한 본선 후보용 현수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명태균 부부는 2022. 5. 10.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윤기중, 권오수의 아들 권혁민 등과 주요 인사석에 자리하였고, 같은 날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의창 지역 공천신청자 8명 중 김영선을 전략공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명태균은 제20대 대선후보 국민의힘 경선 및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80여건)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윤석열 후보 측에 보고하거나 전달(선거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3억 7,520만원), 그후 명태균은 여론조사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 등을 대가로 받았다.

(나) 헌법 및 법률위반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금지), 공직선거법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국민의힘 공천개입

(가) 사실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이외에도, ① 2022. 6. 1.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과 근무연이 있던 전 검찰수사관 김태우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② 2023. 5. 18.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강서구청장 직을 상실하였다가 2023. 8. 14.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김태우가 2023. 10. 11. 실시된 강서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③ 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배제 결정되었던 김진태가 단수공천을 받았던 황상무와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당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④ 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충훈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 관계자에게 “중앙당이 진행하려는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 여론조사에는 교체지수를 넣어

라. 아니면 전략 공천을 고려하라. 재심은 중앙당이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여러 선거 후보 공천과정에 개입하였다.

(나) 헌법 및 법률 위반

이로써 피소추자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정치적 중립의무(제2항), 대통령의 헌법준수・수호의무(헌법 제69조)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창원산단 국정개입

(가) 사실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5.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 339만㎡ 터에 1조 4215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방위·원자력 첨단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명태균은 발표 이전인 2022. 9.경부터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근 토지매입을 권유하고, 2022. 11. 9.경 김영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 직함을 자칭하며 창원시청 고위공무원들로부터 4건의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고, 2022. 11. 23.경 직접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안내하고, 강혜경에게 홍보 팸플릿에 윤석열과 관련된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라고 말하는 등 언행하였는바,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 산단 지정 및 그 부지 선정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상 비밀을 취득하였다[4].

(나) 헌법 및 법률위반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및 헌법준수·수호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제69조),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를 침해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4) 한편 윤석열은 2022. 6. 22.경 경남 창원시 소재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하고, 2022. 7. 28.경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2022. 6.경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삭감 등에 항의하며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 7. 18.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발언하여 파업 진압을 천명하고, 2022. 7. 19. 출근 도중 출입기자들에게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여 이른바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쟁의행위 대응 기조 결정 과정에서, 명태균이 2022. 7. 16.경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 쟁의행위 현장 시찰에 나서 회사 측의 안내를 받아 부사장으로부터 현황을 직접 보고받은 다음, 윤석열에게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 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대응 기조를 조언함으로써, 국정에 개입하였다.

다. 탄핵사유 : 정치적 중립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배[5)]

(1) 대선여론조사·조작 및 김영선 공천개입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5) 가.항에 관한 탄핵사유는 동항 (2) 헌법·법률위반에 기 설명하였고 이하는 주로 나.항 관련 설명임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있게 업무를 수행할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다(헌재 2004헌나1).

명태균이 윤석열 측에 청구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원 상당의 돈은 국민의힘이 이를 공식 대선회계에 반영처리하지 않은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채무로 귀착되고, 윤석열·김건희가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동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이는 수뢰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에게 직접 연락하여 공천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단수공천 되었으므로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이고, 수뢰액이 1억원을 상회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은 물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중범죄이다.

대통령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당의 이른바 1호 당원으로서 당정 간의 업무협의, 정부 입법,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한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과 여당과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확정적 채무면제 방식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구체적 직무행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 정당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노골적으로 기대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 또한 뚜렷하다.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여받은 재산상 이익은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확정적 채무면제라는 점에서 이는 적어도 김영선에 대한 전략공천이 발표된 시점에서야 범죄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전략공천 발표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었으므로,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에서 수뢰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제2항). 한편 정당민주주의하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는 방법이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요청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인바,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지만(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대단히 긴요하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제57조의6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제255조 제3항 제1호),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제86조 제1항 제2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제255조 제1항 제10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억 7,52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고 김영선 공천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제47조의2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게 된다(제230조 제6항).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왜곡·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그 정을 알면서 캠프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법원은 일관되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제96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제252조 제2항),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이 명태균이 주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왜곡·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를 독려하며 보고받았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호). 또한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갚아야 될 개인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 공천을 관철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기부의 제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도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

(라)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결국 이상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지급하여야 거액의 채무를 면제받은 행위, 여론조사 왜곡·조작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 결과를 활용한 행위 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69조)임과 동시에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이는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 부정특혜 금지) 위반,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위반,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위반,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위반,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위반,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위반,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 등 다수 법률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범증이 뚜렷함은 물론 해당 법정형만 보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가 명백히 예상된다[6].

(2) 기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개입 및 창원산단·대우조선해양 국정개입

6) 위 법률위반 중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위반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행위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즉 대통령 취임 이후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명태균 국정농단 일련의 사태 중 중요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탄핵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이외 다수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에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69조)이고,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특히 대통령은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수 알게 되므로, 대통령의 비밀엄수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

명태균이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여부, 부지선정 등에 개입하는 것

을 윤석열이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김건희 등을 통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윤석열이 직접 또는 김건희 등을 통하여 명태균에게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 등을 누설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크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큰 중요사항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누설된 것임은 물론 명태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

(다)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는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 이념과 정의에 합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이를 적극적인 보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없이 명태균에게 비선실세의 역할을 맡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형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또한 위배한 것이다.

(3) 결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사항'과 관련하여 다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를 저질렀는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근거도 없는 반복적 거부권 행사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소추인의 헌법수호의지가 의문시되고, 피소추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피소추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소추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

가.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헌법 제75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행정조직 법률주의(헌법 제96조) 조항 위배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2. 6. 7.자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85호)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68호)를 개정하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업무인 "인사사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조직과 그 직무범위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한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내용을 수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상 인사혁신처는 인사업무를 그 고유업무로 담당하고,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유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것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2022. 6. 7.자 개정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인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무부 내에 별도의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업무 전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행정조직 법률주의 및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에 위배된다.

* 이처럼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담당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직·간접적으로 인사,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2. 8. 2.자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836호)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조직과 그 직무범위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한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내용을 수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상 행정안전부는 그 담당업무에 치안, 경찰업무가 없고, 단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둘 수 있을 뿐이며, 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치안, 경찰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위 2022. 8. 2. 자 개정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어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정부조직법상의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와 경찰청의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변경

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행정조직 법률주의 및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에 위배된다.

* 그간 정부조직법의 치안사무에 관항 개정 연혁, 즉 1948. 7. 17.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 치안사무 포함, 4·19 혁명 이후인 1960. 7. 1. 개정 시 치안사무 삭제,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1. 10. 2. 개정 시 치안사무 재포함, '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1990. 12. 27. 개정 시 치안사무 삭제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2. 9. 8.자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902호)를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대상범죄를 대폭 확대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한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내용을 수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범

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종전에 규정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관한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서 제외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위 2022. 9. 8.자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서 제외된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포함시키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범죄(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중요범죄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찰청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도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6개 중대범죄에서 2개 중대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법률취지에 맞게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4. 1. 1.자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988호)를 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에 안보침해자에 대한 대응조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한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내용을 수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은 국정원의 직무를 정보의 수집, 안보위해자에 대한 대응조치 등으로 제한하고, 종전의 대공수사권한을 폐지하였다.

그런데, 위 2024. 1. 1.자 제정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은 안보위해자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범위를 넘어서서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제출, 수거, 검증, 출국금지 조치 등의 사실상의 수사활동업무로서 국정원법에서 폐지한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준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에 위배된다.

나. 탄핵사유

(1)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헌법 제65조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탄핵사유를 헌법위반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사법부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을 비롯하여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하는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률의 준수는 곧 헌법질서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69조에서 이에 상응하는 내용의 취임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 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을 통하여 법률이 정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대통령령의 법적 한계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 개정과 제정이 국정 전반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헌재 2004헌마859 결정).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3~24. 광복절에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고 발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닌 ‘상해 임시정부’라고 표현하는 등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 지우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홍범도 흉상 철거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방부는 국군 연혁에서 독립군과 광복권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삭제(초대 국방부 장관 이범석의 국군훈령 제1호를 무시)한 데 이어, 2023. 8.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2017년 국방부가 건립한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 지도자 5명의 흉상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방 전 홍범

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지만 박정희(남조선로동당), 백선엽(간도특설대) 등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독도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국가보훈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2.~23.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시 독도 인근 해상에 자위대 등장(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하였고,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데 2023. 12. 국방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독도를 표기한 지도 없음)하고 최근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조차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대법원은 2018년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일본기업의 조선인 강제노동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책임 미이행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추심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 3. 6.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만'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을 만들고 이 돈으로 일본을 대신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 모두 명확하게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재단은 2023. 7. 제3자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강제동원은 전시 범죄로서 보편 인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은 거짓 취업 조건에 속아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당하고 폭행당했으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해야 했다. 따라서 가해국인 일본의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해법안에는 이러한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의 책임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 자유와 인권 등 한일 양국 공동 이익을 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안은 역으로 가장 자유와 인권이 필요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같은 취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법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판결이고 대한민국 신인도에 손상이 일었다고 했으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요구도 그만하자,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얼치기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소모적인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야기됐다”고 맹비난하였다.

위 변제안은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까지 떨어뜨렸다. 결론과 시한을 정해두고 하는 협상은 자기 패를 다 보여주는 것으로 패배가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세계정세와 구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단순화한 인식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과속 외교로 한국의 실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다수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는 2024. 2.

9. 내놓은 보고서에서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과 지체 없는 적절한 조치'를 일본 정부에 촉구하였다.

재단은 법원에 피해자 배상금을 강제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은 '당사자와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당사자가 거부할 때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469조에 어긋난다고 보아 12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재단은 항고를 한 상태이다. 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469조 1항(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함)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불법행위 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3자 변제안의 위법성이 선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헌법상 인간존엄성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헌법 10조, 11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다.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80년대 말에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1991. 8. 14.에 김학순이 스스로 나서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구제를 호소한 이래로,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은 범죄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또한 유엔 인권소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보고서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미국 하원의 결의 등 수많은 국가의 의회와 지방의회의 결의들을 통해 국제법 위반과 일본국의 법적 책임이 거듭 확인되어 왔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시민들의 요구와 그것을 수용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반영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 타국의 개인에게 손해를 입한 국가는 국가면제 법리에 기댈 수 없으므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적 양보 외교', 대일 저자세 외교 기조가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 3.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

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고, 2024. 10. 9.에는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지만 한국 대표는 침묵하여 파장이 일기도 하였다.

각국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가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베를린 소녀상은 철거 위기에 놓였다.

2023년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정부가 펴낸 <2023년 일본개황>에는 기존판에 담겼던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 248개를 통째로 삭제하였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의 경우에도 일본이 등재 지원서와 전시물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담지 않는 등 역사 부정을 일삼았으며, 한국 정부가 동의 조건으로 받아냈다는 전시물에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강제성이 희석된 표현이 담기거나 조선인 피해자 증언과 같은 핵심 전시는 모두 배제되어 '강제동원', '강제노동' 등 강제와 관련한 명시적 표현이 없기에 일본 입장만 투영한 꼴이 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외교청서와 교과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라. 진화위 및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기관 뉴라이트 인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후부터 친일적, 대일 굴종적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에 21명 이상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임명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대 역사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이 그러한 기관들이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보수'를 걸고 나온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후로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사관 논란 등의 중심에 서 왔다.

한중연은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이자 강제동원과 위안부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해 온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원장, 교과서 포럼에서 활동한 김주성 이사장이 포진했고, 2022. 12. 9.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2008년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으며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일었던 2013년에는 국정원지지 글을 언론에 기고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024. 8.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과거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고 하였고, 2022. 8.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에서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폄하하고 5·18, 4·3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부정하며 안익태·백선엽 등 친일파로 단죄된 이들을 옹호하였으며, 면접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마. 탄핵사유 : 헌법 전문 등 위배

(1) 헌법 전문은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88헌가6 결정).

(2)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

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서 보여주는 외교적 행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입장은 1910년 한일합방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으로부터 찾으려는 헌법 전문의 명백한 가치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전문 등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헌법 위배로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한다.

6.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1) 핵오염수 방출 경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011. 3. 11.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파손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와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닿으면서 끊임없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는 핵폐기물이므로 주변환경과 완전히 차단하고 밀폐해서 관리해야 하지만 일본정부는 더이상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할 수 없다면서 2021.

4. 13.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방침 발표에 대하여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미국 국립해양연구소협회(NAML, 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Laboratories), 일본 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 중국 정부 등 국제사회와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반대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ALPS 취급의 안전 관련 측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한 방류를 지원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과 위임사항(TOR)에 서명”하고 “검토 범위에 합의”해 컨설팅 성격의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2023. 7.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23. 8. 24.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여, 2024. 11. 4.까지 총 10차(1차 당 7800톤 가량)에 걸쳐 오염수를 계속 방류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를 통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ALPS 성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특히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세포조직이나 장기에 유착하면 치명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슘-137,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과 같이 생물의 세포, 장기, 조직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은 낮은 농도로 방출된다 하더라도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물축적 효과(먹이사슬 등을 통해 독성이 증폭되거나 농축)를 일으켜 해양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양생물을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 해양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데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Helmholtz Centre for Ocean Research Kiel)가 2012. 발표한 시뮬레이션 가동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여 일이면 제주도까지, 1년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으며, 3년 만에 태평양 전체가 방사성 핵종 오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극히 경미하다고 주장할 뿐,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오염수의 종류와 총량,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 헌법 위반

우리 국민들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69.9kg로 2019년 기준, 세계 1위에 달하고, 해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염전업, 양식업, 관광업 등 해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도 수십만 명인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거나 방사성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국제조약 및 국내 법령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조치로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거나,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외교 행위를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해양법협약」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대한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상당한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국제분쟁절차로 전혀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에서 대표 시료만을 채취 분석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을 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에 의존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취지의 브리핑과 SNS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부당히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는 (1)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7]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의 점에서, (2) 정부의 일련의 작위적 조치들[8]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 국민의 생명권(제10조), 건강(보건)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안전권,

---

7) 구체적으로 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②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③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④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

8) 구체적으로, ①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국들의 자기결정에 개입, ② 소극적 방사능검사, ③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

재산권(제23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알권리, 행복추구권(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태원 참사

(1) 참사 발생 경위

2022. 8. 침수피해, 2022. 10. 이태원참사, 2023. 오송참사, 2023. 잼버리 사태, 2024. 아리셀 사태 등 일련의 대규모 재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형식적인 사고원인 조사와 대응, '형사처벌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공무원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2022. 핼러윈 데이 당시 윤석열 정부 주안점은 경찰·검찰·관세청에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고, 이태원 현장에서도 10만 인파 대비가 아니라 마약수사만을 강조하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마약 부검까지 실시(마약사범 적발 0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태원 부근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찰,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의 정책 주안점이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위주로 변화하였고 대통

령실 앞 집회 대비, 집회 후 전단지 수거 등에 동원됨으로써 연례적인 이태원 지역의 핼러윈 데이 인파 대비에 소홀하게 되었다.

경찰은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무시하였고(참사 후 정보보고서 삭제),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국가 부재의 상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국가의 재난 컨트럴타워 기능이 마비되어, 2022. 12.경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조사에서 "국정상황실은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18. 국가위기관리지침에 의하면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로 명시]가 아닙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국가위기관리지침조차 무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참사 전후에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등 사이에 어떤 의사연락을 했는지 등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참사 후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 문건을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는데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내용이었다.

(2) 국가의 의무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고합25, 2024고합22(병합) 판결은 이 사건 참사발생 당시 위와 같은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생명권 보장의무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가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용산경찰서장 등은 각종 법령과 매뉴얼 등에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취약한 특성,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 인파의 집중 상황, 예년에 비해 훨씬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외부환경, 예년보다 많은 인파의 집중이 있을 것이라는 객관적 예측 가능성, 과거 경찰서에서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한 전례에 더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인파 집중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인파 집중으로 인한 치안 위험 상황을 미리 혹은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파관리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통하여 긴급한 위험 신고에 대해 적시에 그리고 위험도에 상응하여 대응하고 현장의 인파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통행 방향의 제한,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 차단, 우회

로 확보 등을 통해 인파를 분산하거나 군중 밀집 상태를 해소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및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특정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현저히 해태하여 159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대규모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헌법 및 법률 위반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재해예방의무와 생명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조(기본이념)은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안전기본법상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실(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은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159명의 사망자, 3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의 재난을 예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는 최소한도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소추자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 조항(헌법 제10조)을 위배하여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생명안전보호 의무와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구체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한 데에 대통령실 차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형사책임도 성립할 것이다.

다. 탄핵사유 :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위배

(1)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

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여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 제69조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위 2004헌나1, 2016헌나1). 그러나 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사유를 구성한다(위 2016헌나1 보충의견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따라서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고 대통령에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가의 제1 임무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전문)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최고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위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 역시 포함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구체적 작위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단순히 도의적, 정치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고, 그 불이행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는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된 경우 탄핵사유에서 말하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된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작위의무 발생), 둘째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불성실한 직무수행).

(3)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나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재난에 처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전혀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조항(헌법 제10조)과 성실한 직책 수행 조항(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것이다.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조항 위배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만 2년도 안 되는 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억압하는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언론 자유를 강조했지만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자신의 욕설파동의 책임을 MBC에 돌리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검찰을 동원해 기자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빌미로 도어스태핑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YTN은 사장이 바뀌자마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편파왜곡 방송’을 국민 앞에 사과하였고, 지난 2월 사기업에 졸속 매각하여 민영화하였다. 또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하루아침에 사회자와 작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KBS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압박을 가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이 등장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한 후 '뉴스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 폐지에 이어, 노골적인 대통령 선전용 대담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영도 불허하였다.

인터넷 언론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선시기 윤석열 후보자를 비판한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방심위 심의 대상인지부터 논란이 되었음에도 심의를 강행하였고, 당시 김기현 여당 대표는 뉴스타파에 대하여 '사형을 처해야 할 반역'이라고 하면서 포털의 저급한 댓글 수준의 막말을 하였고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였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지역 공영방송 TBS의 지원금을 끊고 폐지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3. 5.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로 문화방송(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9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은 공적 기구를 동원하여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의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말을 틀어막는 '입틀막'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군사정권 시절 기자에 대한 '회칼 테러' 사건을 거론하며 언론을 협박하는 '칼틀막'에 이르게 되었다. 수시로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방심위, 선방심위와 같은 공적 기구가 나서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언틀막의 일상화'가 벌어지고 있다.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 해임시키고(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당했다) 그 자리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시도에 꼼수 사퇴를 한 이후엔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검찰 출신 김홍일 변호사로 채웠고,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 비판적 방송언론인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및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한 뒤, 관련 조사·감사가 시작

되면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제청)안을 상정해 의결에 나서는 식으로 언론 탄압은 일정한 공식처럼 진행되었고, 2023. 8.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의결이 이뤄진 것도 이러한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하여 특정 언론에 대하여 편파적인 표적 심의로 법정 제재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한 표적 심의 대상은 MBC인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뒤, 이 두 기관은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 총선시기에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MBC 관계자를 징계했다. 중앙선관위조차 선거와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보도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편협한 관점에 따른 해석으로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켰고, '김건희 특검'에서 '여사' 글자를 빠트린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면서 SBS에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모든 프로그램의 패널, 앵커 등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에서는 위법적으로 위원을 해임·해촉하고 야당 추천 위원 임명·위촉을 거부한 채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도 교체하려 하였

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 심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까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24. 7. 31.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이사로 임명했으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신청이 1, 2심 법원에서 모두 인용된 바 있다.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매기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년 만에 28위에서 47위로 내려앉았고,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된 20개국에도 포함되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43위였던 것이 2023년 47위로, 2024년에는 무려 15계단이나 하락해 62위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나 기록됐던 수치이다.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말 21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이사회,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만이 아니라 언론단체와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 골고루 배분하여 공영방송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공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다.

제 야당은 22대 국회 구성 후 2024. 8. 12. 위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진 방송4법 개정안을 다시 힘겹게 통과 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이 또한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언론 장악 기조 속에 개혁 법안들이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 과정에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중요한 기본권들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라. 탄핵사유

이처럼 피소추자는 단순히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여 보려는 조치를 훨씬 초과하여 방송관련 기관의 야당 추천 위원을 특별한 흠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채 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방송사 대표이사 등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그 임원 선임이나 비판적 인사 배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거듭 받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격형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고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탄핵사유의 중대성

가. 중대성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즉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화된다.

나. 검토 : 파면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대통령 윤석열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후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

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장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있는 인사의 경질 등 내외의 요구에 귀를 닫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기치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기운을 촉진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내팽개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균형잡힌 정책이나 정치 정상화 등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비정상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장악 등 결과를 위해서 형식적인 법률에만 부합

하면 된다는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편협한 사고로 일관하여 정국이 경색되고 사회·문화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만 축적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는 더욱더 멀어져 갔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처음의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장 비판하였던 선택적 정의·기소와 수사 외압·무마 등 금지라는 최소한도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린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되었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감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배우자의 몰상식적인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떠한 희망과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하여 밝혀진 대선시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뇌물수수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및 이를 통한 수수 뇌물액에 상응하는 공천보답 의혹 등이 더욱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는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등이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부부의 육성 및 문자메시지 등은 그 자체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인의 잘못을 옹호하고, 명태균 의혹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깊이 실망시켰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의 배반은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